

가정폭력 피해자/생존자에 대한 주택 차별 예방

여러분의 의무

뉴욕시 인권위원회(The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)는 시민 여러분이 실천을 통해 뉴욕시 인권법을 준수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. 본 문서는 가정폭력, 성범죄,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로서 집을 찾고 있는 세입자 및 개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부터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세입자나 신청자를 가정폭력이나 성범죄,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라는 신분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면 뉴욕시 인권법에 위배됩니다.

보호 대상은 누구입니까?

뉴욕시에 있는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뉴욕시에서 거주시설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:

가정폭력의 피해자/생존자: 형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의 폭력 행위나 폭력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
- 현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
- 희생자/생존자와 함께 자녀를 가진 사람
- 희생자/생존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
- 희생자/생존자와 연애관계 또는 친밀한 사회관계를 지속하고 있거나 지속했었던 사람
- 피해자/희생자와 같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

또는, 형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성범죄나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

적용되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?

- 이 법은 뉴욕시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주거시설에 적용됩니다. 유일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주거시설을 광고하지 않는 2가족 주택
 - 또는
 -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도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방(들)

이는 집주인, 임대인, 임차인, 전차인, 양수인, 관리 대리인 또는 주거시설을 판매, 임대, 대여할(또는 판매, 임대, 대여를 승인할) 권한이 있는 기타인과 그 대리인이나 직원 모두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금지 사항:

-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라는 이유로 주택의 판매, 대여 또는 임대를 거절하는 행위
-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라는 이유로 주택 이용 가능성 정보를 잘못 전하는 행위

-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에게 아파트를 비우도록 강요하는 행위
-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라는 이유로 주택의 판매, 임대 또는 대여에 대해 다른 조건이나 특전을 설정하는 행위(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포함)
-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생존자에게 다른 일반인과 다른 주택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

NYCHRL은 고용 시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/희생자라는 개인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차별 역시 금지하며, 고용주에게 가정폭력,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희생자/생존자를 위해 직장에 합리적인 숙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.

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주택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무료 워크샵에 등록하시려면 [NYC.gov/HumanRights](https://www.nyc.gov/HumanRights) 를 방문하십시오.